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신설 2021. 5. 26.>

채석변경신고의 첨부서류(제30조제3항 관련)

변경사항	첨부서류
1. 제30조제1항 제1호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	가. 변경사항에 관한 사업계획서 1부 나. 측량업자등이 측량한 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연차별 채석구역실측도 1부(연차별 생산·이용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다. 채석량에 대하여 일반측량업자등이 측량한 구적도 1부(연차별 생산·이용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라. 복구공종·공법 및 겨냥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 1부(연차별 생산·이용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2. 채석신고를 한 자 및 그 대표자의 명의변경	가. 신고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나. 신고를 한 자 및 그 대표자의 명의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다. 이미 신고한 자의 명의변경동의서 1부 라. 법 제3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예치된 복구비의 권리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마. 산림골재채취업에 관한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 1부(쇄골재용 석재의 굴취·채취의 경우에 한정한다) 바. 석재채취업 등록증 사본 1부(건축용·공예용·조경용 및 토목용 석재의 굴취·채취의 경우에 한정한다)
3. 법인명칭의 변경이 없는 법인대표의 변경	없음
4. 법인대표의 변경이 없는 법인명칭의 변경	가. 신고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나. 산림골재채취업에 관한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 1부(쇄골재용 석재의 굴취·채취의 경우에 한정한다) 다. 석재채취업 등록증 사본 1부(건축용·공예용·조경용 및 토목용 석재의 굴취·채취의 경우에 한정한다) 라. 법 제3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예치된 복구비의 권리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5. 채석신고를	가. 산림골재채취업에 관한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 1부(쇄골재

한 석재의 용 도변경	용 석재의 굴취·채취의 경우에 한정한다) 나. 석재채취업 등록증 사본 1부(건축용·공예용·조경용 및 토목용 석재의 굴취·채취의 경우에 한정한다) 다. 채석경제성평가보고서 1부(법 제26조제1항 본문에 따라 채석 경제성평가를 받아야 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	---